

2018.10.11.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정미



문의 이정미 의원실 02-784-4591 담당 정승도 010-5299-6559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51호
Tel 02-784-4591 Fax 02-788-0280

<http://leejm.co.kr>

[@justic551](#) [@jinbo27](#)

롯데하이마트, 판매직 3,846명 불법파견
백화점·대형마트 등 판매사원(15만명) 간접고용 심각
 - 가전제품, 음료·식료품 판매 업무는 파견대상업무 위반 -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과거 이마트 판매사원 용역회사
소속 알고도 조사하지 않고 파견법 혐의 없다 결론
 - 삼성·LG·대우일렉·만도 등 인력업체 통해 3,846명 하이마트 파견
 - 이정미, 대규모유통업에 만연된 판매사원 불법파견, 전수 조사해야
 - 판매사원, 대규모유통업·납품업체·인력업체 3중고 심각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롯데하이마트가 삼성, LG, 대우 일렉트로닉스, 만도 등 납품업자로 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전국 460여 지점에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는 전국 22개 지사와 460여 지점에 납품업자인 삼성, LG, 대우 일렉트로닉스, 만도, 쿠쿠, 쿠첸, 동맹매직 등으로 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을 판매 하고 있다. 인력업체 중 지난해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공급했던 불법파견업체인 ‘아람인테크’도 포함되어 있었다(붙임 그림1 참조). 롯데하이마트는 작년까지 이들 판매사원의 채용, 실적점검, 퇴근지시, 재고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 지휘, 감독을 해온 것으로 확인 되었다.

대규모유통업의 납품업체 인력파견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에 따라 사전 서면약정 등 납품업자등(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파견이 허용되며, 이때 판매사원은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만을 판매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인력업체로 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행하는 경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위반 즉 불법파견이 된다.

현행 「파견법」은 화장품, 건설자재, 연탄, 시계, 귀금속, 운용용품, 자전거 등 일부 상품판매 업무에(통계청 고시 제2000-2호, [한국표준직업분류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화점, 마트에서 가전제품(한국표준직업분류 51204)과 음료·식료품 판매(한국표준직업분류 51202)를 행하고 있는 판매사원의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

특히 공정위가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내 판매사원의 수는 15만명이고 종업원 파견 납품업자 수는 11,674개 업체로 이들 소속 판매사원들이 상당수 인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붙임 표1 참조](#)).

한편 고용노동부 태스크포스(TF)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2013년도 이마트 불법파견 근로감독 및 2016년 같은 내용의 근로감독 청원에 대해 노동부가 납품업체 판매사원들의 간접고용 존재를 확인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고 파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단정」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이마트내 한 음료회사 판매사원은 10년 동안 최저임금으로 음료를 판매하면서 인력업체만 3번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적발 내용 중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파견 된 판매사원에게 다른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진열하게 하거나, 상품하차, 검열, 진열, 포

장, 창고반입, 재고관리, 매장청소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감독 등 권리남용'이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반행위가 노동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노동부가 감독 등 직무를 방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대규모유통업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이 제한되는데 예외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 납품할 상품만을 판매하는 경우 허용된다. 인력업체가 납품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아님에도 공정위와 노동부가 대규모유통업의 불법적 간접고용을 방치한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고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해 불법파견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1] 대형유통업 납품업체 판촉(파내)사원 파견규모 <공정위, 2017년말 기준>

업체명	판촉사원 수 (단위 : 명), 단 매장임차인 판매사원 제외		
	전체 (15 만여명)	인력공급업체소속	종업원파견 납품업자 수 (11,674 업체)
롯데백화점	74,574	3,619 (2인 이하 가정)	2,169
신세계백화점 (18.6 월기준)	25,274	미제출	7,470
현대백화점	18,858	824 (임대甲 매장 제외)	1,357
이마트 (18.6 월기준)	13,930	미제출	181
홈플러스	10,026	미제출	195
롯데마트	6,667	-	302
롯데하이마트	(3,846)	(3,846)	LG, 삼성 , 대우일렉 , 만도 등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 한 것임

[그림1] 롯데하이마트 판촉사원 현황(2017년 기준)

Maker 판촉사원 현황

- 당사와 메이커와의 계약에 의해 Maker 판촉사원이 당사 지점에서 판매 (3,846명)
- 지점 內 평균 약 8명 (57%)의 Maker 판촉사원 근무, 삼성 / LG 판촉사원 비중은 전체 64.5%

(단위 : 명, %)

Maker 판촉사원 계약 구조			당사 지점 인원 구조						
			구 분	인 원 수					
			당 사	Maker 판촉사원					
인 원	14	6	8						
(구 성 비)	100	43	57						
Maker별 판촉사원 현황									
구 분	Maker 판 촉 사 원								
	삼 성	L G	대우일렉	만 도	쿠 쿠	쿠 쉐	동양매직	기 타	
인 원	3,846	1,236	1,220	341	257	237	210	91	227
(구 성 비)	100.0	32.8	31.7	8.9	6.7	6.2	5.5	2.4	5.9

[그림2] 2018.9.25.자 노동부 회시 내용 중 발췌

- 현행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상 업무를 기준으로 파견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무는 “51204 가정용 기기, 가구 및 장비 소매판매원, 음료·식료품 판매 업무는 “5120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 이들은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인력운영형태가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무나 음료·식료품 판매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형사처벌 및 직접고용 규정이 적용됨
 - *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